

제371회 국회(정기회)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19. 10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 . 일반 현황	1
II . 주요업무 추진 현황	3
1.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	3
2.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	6
3.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	9
4.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·유통 기반 확충	11
5.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	14
III . 주요 현안 과제	16
1. 방송사업자 재허가·재승인	16
2.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...	17
3.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	18
IV . 참고 자료	19
1. 2019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	19

I.

일반 현황

□ 연 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17. 8. 1.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- 지상파 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 채널 관련 정책
- 방송광고 정책, 편성평가 정책, 방송진흥 기획, 방송정책 기획
-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익 증진,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야	법률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•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(일부)• 방송법 (일부)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• 방송문화진흥회법•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•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• 전파법 (일부)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조직 : 1처 3국 1관 20과(담당관) / 1소속기관



○ 정원 : 277명

(’19. 10월 현재)

구분	정무직	공무원	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본부	5	5		5	16	17	74	114	236명
소속기관	-	-		-	1	-	5	35	41명

□ 예산 및 기금 : (’18년) 2,386억원 ⇒ (’19년) 2,579억원 [+193억원]

○ (재원) 일반회계 627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952억원

○ (기능) 인건비 256억원, 기본경비 40억원, 주요사업비 2,283억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양승동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김명중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상균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김기만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신태섭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Ⅱ.

주요업무 추진 현황

①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

□ 개요

-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할수록 전통적 방송매체가 수행해야 할 공정성과 공공성, 사회적 책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, 방송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

□ 추진실적

① 방송의 역할 재정립

- (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)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이사·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국회 입법논의 지원
 - 국민추천이사제, 사장 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국회에 제출('18. 12월)한 정책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('19. 1월 법안소위 설명 등)
- (수신료 감면제도 개선) 체납 가산금을 인하(5→3%)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며 선납 할인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('19.7월 시행)
 -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 지원(법 개정안 발의 '19.2월)
- (중장기 규제체계 정비)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'방송제도개선 추진반'을 구성·운영('19.4월~)
 -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고, 신규 융합서비스 성장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제도개선 방안 마련

※ 방송·통신·미디어·법률 전문가,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

② 방송의 공정성 · 공익성 제고

- (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제도 개선) 지상파·중편·보도채널 등의 재허가·재승인 시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* 등에 대해 이행 점검 실시('19.2월~)
 - ※ 종편PP의 방송 품격제고 조건과 지상파방송의 경영투명성 및 콘텐츠 투자 강화, 외주제작 및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등
 -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(3~5년) 차별화, 프로그램 균형편성과 지역편성 등을 중점 심사하도록 재허가 제도개선('19.5월)
- (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) 방송의 제작·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적극 지원
 - 방송사측·종사자측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, 제작·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기능 강화 및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
- (공정성 평가 강화) 방송평가 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및 오보 관련 확정판결 등 반영 확대, 종편PP의 프로그램 질 평가 확대
 - 재난방송 실시 관련 지상파방송 평가 강화, 유료방송 평가항목 신설('19.1월~)

③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

- (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) 재난·재해에 대비하여 재난방송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음영지역 해소
 - 지하 공간(3,900여개 터널·지하철 등) 전수 조사를 통해 수신환경 개선 및 터널 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진입부 비상방송 실시('19. 6~12월)
- (재난방송 개선대책 추진) 폭발, 산불 등 사회재난 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('19.5월)
 -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주체 일원화,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역할 제고
 - 수어방송 확대, 대피요령·대피장소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

○ (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)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, 자금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 지원

-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추가 배점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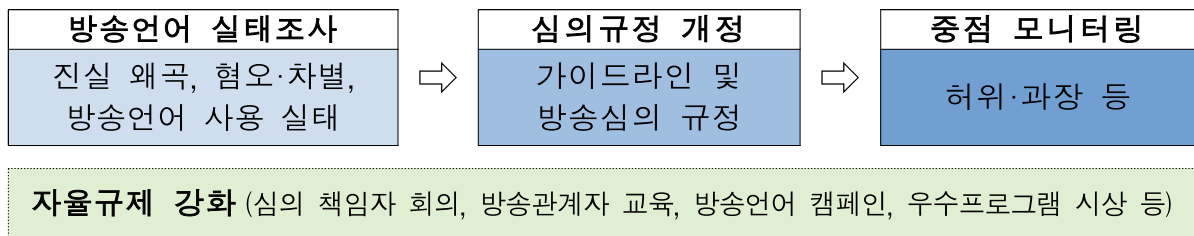
※ '19년 9월 기준 78개사 지원

○ (공익광고 제도개선) '비상업적 공익광고'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익 광고 의무편성의 실효성 제고*를 추진(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, '19.8월~)

*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

○ (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제고) '18년 방송언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및 심의규정을 개정('19.9월)하고, 관계자 교육(10회), 심의책임자 회의(23회)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('19.5월) 등을 통해 자율규제 강화

<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>



○ (남북 방송통신 교류) 통일방송프로그램(TV/라디오) 사업자 선정·제작('19.12월 방송) 중이며,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해외 전문가와 공동연구 진행 중

○ (지역방송 제작·유통 지원)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규·특집, 해외유통, 뉴미디어 등 분야별 프로그램 제작 지원(17개사 27개 프로그램, 34억원)

□ 향후 계획

-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: '19. 10월
- 사회재난 재난방송 실시기준 마련 : '19. 12월
-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 : '19. 12월

②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

□ 개요

- 방송통신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됨에 따라 남녀노소, 장애인 등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·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, 동시에 복잡·다양해지는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

□ 추진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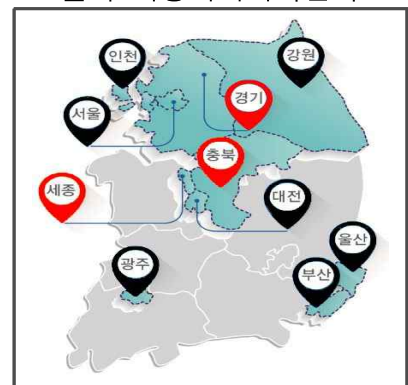
①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

- (미디어교육 강화)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및 참여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

※ 프로그램제작 교육, 제작실습, 비판적 이해능력 제고 등 단계별 미디어교육 실시

- 초·중·고 및 대학생 대상 **학년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**을 통해 미디어를 **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**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('19.8월 기준 자유학기제 130개교, 동아리 78개교)
- 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수요에 맞는 **특화 프로그램** 개발·운영 및 도서 산간 지역에 **'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'** 운영('19.8월 기준 160회)

<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>



- (미디어센터 확대) 현재 7개인 지역 센터를 17개 광역시·도에 확대 구축 추진

- 현재,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인천, 울산, 강원 등 7개 지역 센터 운영 중
- '19년 경기 센터 개관 및 세종충북 센터 구축 중

- (미디어교육 추진체계 정립) 방송은 물론 통신·인터넷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- 「미디어교육 지원법」 (신경민의원 발의, '18.5월) 제정 지원을 통해 방통위·문체부·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

②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

- (지역밀착형 미디어 활성화)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을 확대('18년 50개 → '19년 70개 마을) 하고,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('19.3월)
- (국민의 방송참여 확대) 방송에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프로그램*의 점진적 확대

<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확대 >

2017년	⇒	2018년	⇒	2019년 실적
935.7시간		956.5시간		992시간

* 시청자가 직접 기획·제작한 프로그램으로 KBS·공동체라디오는 의무적으로 편성·방송

③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

- (시청각장애이용 TV 보급)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음성안내·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 우선 보급('19년 15,000대)
 - ※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누적 보급률 : '19년 80%, '20년 90%, '21년 100% 달성
- (장애인방송 제작지원) 방송사의 장애인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장애학생, 발달장애인 등 시청대상별 전용 콘텐츠 제작·보급
 - 자막, 수어·화면해설 등 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(약 46억원)
 -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(자막·화면해설 3,900여 편) 및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방송콘텐츠 제작·보급
- (모바일 방송 시청 지원) 스마트폰, PC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자막·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서비스 개발 ('19~'23년)

④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

- (지능정보시대의 이용자 보호체계 정립)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강화 등 **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마련**(‘19.2월)
 - AI·데이터 활용증대에 따른 ‘(가칭)이용자 보호원칙*’을 마련 추진
 - * 투명성, 책임성, 안전성, 차별금지, 자율성, 참여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
- (통신장애 대응 개선)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(원인·대응조치·접수처 등)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신설(‘19.6월 시행)
 -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**행동 매뉴얼을 마련**하고,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
- (이용자 피해구제 실질화) 통신 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·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「통신분쟁조정제도」 도입·시행(‘19.6월~)
 - ※ 통신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재정제도(90일)에 비해 처리기한 단축(60일)
 - 단말기 결합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추진(입법지원, 연중)
- (결합상품 해지 간소화) 결합상품 사업자 전환시(가입·해지) 신규 사업자에게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가 자동해지 되도록 **원스톱 사업자 전환시스템 구축계획 수립**

(‘18년) 개선방안 마련	⇨	(‘19년)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	⇨	(‘20년) 시스템 구축·적용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- (개인정보 보호와 활용) 사업자의 **손해배상책임보험** 등 가입 의무화(‘19.6월)
 -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**국가자격제도**,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**과징금 제도** 도입,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**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**(허가→등록) 추진(입법지원, 연중)

□ 향후 계획

- 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: ‘19. 10월
- 위치정보법·정보통신망법 입법지원 : 연중

③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□ 개요

- 열악한 외주제작시장 등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국내외 사업자 및 방송 매체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

□ 추진실적

①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

- (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) 계약서 구성, 제작비 산정·지급, 저작권 등 권리·수익배분 등에 관한 ‘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’ 마련(19.7월)

* ① 방송사-외주사 계약 시 서면계약 체결 등 거래의 기본원칙 확립, ② 제작비 산정 기준 등 제공 정보를 명시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, ③ 방송사·외주사의 자율적 외주제작 환경 개선 노력 유도를 목표로 마련

-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거래 현황*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사·외주사 대상의 실태조사 정례화(17년~, 문체부 공동)

* 계약 형태, 계약체결 시기, 권리·수익배분 비율, 제작비 지급방식 등

- (ICT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구축) 5G 상용화, 플랫폼사업자 영향력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체계 정비(19.2월~)

※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(19.6월~), 통신법제 정비 연구반(19.2월~) 운영

- (불공정행위 점점 강화)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 시장과 단말기유통·방송 분야에서의 각종 부당 거래행위를 중점 점검 및 제재

▪ (플랫폼 분야) 앱마켓의 중소 앱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, 미디어 콘텐츠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

▪ (단말기유통 분야) 유통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·강요, 온라인 불법판매 유도행위 등

▪ (홈쇼핑 분야) 유료방송사의 채널 번호 부당 변경, 홈쇼핑사의 납품업체 편성 취소 등

▪ (방송광고 분야) 방송광고판매대행사와 중소지상파 간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등

- (지상파 재송신 합의 유도) 지상파-유료방송간 재송신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, 대가검증 협의체 등을 통한 합의 촉진

②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

- (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) 국내외 CP 간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'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' 마련 추진
 - 방통위·과기부 공동 연구반 운영('18.11월~)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(개인정보 분야 규제집행력 강화)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수·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(시행령 개정, '19.3월)
 - *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
 -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채널 마련
- (불법행위 규제 강화) 역외규정* 시행('19.6월)에 따라 해외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**
 - *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·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
 - ** '18년 앱마켓사업자 최초 평가, '19년 유튜브, 페이스북 등 SNS사업자까지 확대

③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

- (종편PP 규제 합리화) 종편PP의 매출 및 시청률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칭규제를 개선하고 규제합리성 제고
 - 종편PP를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지원
 - 종편PP에 대해 전체방송시간의 35% 이내의 외주제작 편성 의무 적용(고시 개정, '19.6월) 및 분담금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개선(고시 개정, '19.8월)
- (IPTV 자료제출 규정 신설)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유료방송사(IPTV, SO)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(개정안 법제처 심사중, '19.8월~)

□ 향후 계획

- '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' 시행 : '19. 11월~
- IPTV법 개정안 국회 제출 : '19. 11월
-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: '19. 12월

④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·유통 기반 확충

□ 개 요

- 심화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 대응하고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,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 자원 확보 및 온·오프라인 해외진출 기반 마련,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비 등 생태계 전반의 개선 추진

□ 추진실적

① 제작자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

- (방송광고제도 개선)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에 대응하여 광고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제작자원 확충 기반 마련
 -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,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
- (협찬제도 개선) 협찬의 투명성 제고와 시청권 보호 등 협찬 제도 개선을 통해 협찬시장의 건전화 유도
 - 협찬 정의 조항 신설,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 명확화, 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(개정안 규개위 심사중, '19.8월~)
- (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)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·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·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허가 유효기간 조정(5년→3~5년)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(개정안 규개위 심사중, '19.7월~)

②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

- (공동제작협정 확대)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신남방·신북방 거점국가들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

- ASEAN 10개국 중 시장규모 및 한류 파급 정도가 큰 **주요3국**(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)과 우선 협정체결 및 터키·캐나다 등과 신규 추진
 - ※ ‘한국-베트남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’ 체결 (’19.3.26.), 발효(’19.8.5.)
- **(해외시장 조사)** 국내방송사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국내외 방송 콘텐츠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·운영
 - 미국·인도·캐나다·터키·헝가리 5개국 대상 방송시장·규제 현황, 현지 시청자 대상 미디어(총 2천명 이상) 이용행태 등 조사
- **(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)** 국내외 사업자 간 실질적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, 한류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 확대(’19.6.19~21.)

③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

- **(OTT 서비스 제도화)**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 지원
 -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**최소 규제**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논의 지원
 - ※ 의원발의 : 방송법·IPTV법 개정안(’18.10월 변재일), 방송법 개정안(’19.7월 김성수)
 - **OTT 컨소시엄** 구성 등 방송·통신사업자 간 제휴·협력으로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
 - ※ SKB ‘옥수수’ - 지상파 3사 ‘푹’ 공동으로 방송·통신 연합 OTT 설립(’19.9월, 웨이브(WAVVE))
- **(지상파 UHD 재정비)** ‘15년 수립한 「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」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
 - 방통위,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‘UHD 추진점검 TF’를 구성·운영(’19.4월~)하고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(안)을 마련(’19.8월)

④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

- (기업 간 인수·합병 시 공공성 확보) 미디어 기업 간 인수·합병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·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,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
 - ※ 공정위(기업결합심사)와 과기정통부(SO 변경허가 등)에서 SKB-티브로드 합병 관련 신청을 접수('19.5.9)하여 심사 진행 중
-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,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시장획정 및 분석방식 개선('19.3월)
- (데이터 개방 확대)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기업·연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, 전담 인력도 확충
 -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시청자의 인터넷 반응정보를 수집하여 콘텐츠가치를 분석·공개함으로써 한류 활성화 등 지원('19.2월~)
 - 불법대출·도박 등 범죄예방과 스팸 차단 서비스 개발·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팸 데이터* 개방 종합계획 수립('19.12월)
 - *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가 신고하거나 스팸 트랩에 수집된 데이터(스팸 수신 일시, 스팸문자 내용 등)
 - 긴급구조 목적의 전국 WiFi AP DB를 위치정보사업에 활용토록 개방('19.12월)

□ 향후 계획

-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(태국·캐나다·터키 등) : '19. 10월~
- 협찬 및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: '19. 10월~
- 5개국(미·인·캐·터·형) 방송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표: '19. 12월

5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

□ 개요

-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관련 제도 개선 추진
 - 동시에,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화되는 불법정보·음란물 유통, 사이버 폭력, 허위조작정보 확산,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 마련

□ 추진실적

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

- (임시조치 제도 개선) 인터넷 상 임시조치 관련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**이의제기권 신설**,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
- (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) 인터넷상 비판 기능 활성화 및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* 신설 추진

* 형법(제310조)은 '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' 처벌하지 않음

②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- (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)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(24시간 이내)를 위한 방통위설치법상 **심의절차 개선**(개정안 과방위 의결 '19.9월),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*에 대한 **점검 강화**
 - * ①웹사이트 및 SNS 운영자·광고업자 ②웹하드·헤비업로더 ③음란 인터넷방송업자
- 포털·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**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**(19.6월~)
 - * 신고·삭제요청 등으로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삭제·접속차단 조치
- (웹하드 카르텔 근절)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**주식·지분 소유를 금지**, 기술적 조치 미이행 시 **징벌적 과징금 도입** 등 입법지원(19년~)

- DNA 필터링 기술 적용('19.1월) 및 기술조치 현장점검 강화(상시)
 - ※ DNA 필터링 미적용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행정처분
-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웹하드와 미등록·유사 웹하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수사의뢰 실시
- (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)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과 적절한 규제수준 논의를 위한 공론화 협의회 구성·운영('19.6월~)
- (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) 허위조작정보 관련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,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 모색
 -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·언론계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'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' 구성·운영('19.6월~)
 - ※ 허위정보에 관한 EU 실천강령 등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자율규제 모범사례 발굴 등
 - 인터넷 사업자 등의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, 이용자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 강화

③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

- (청소년 보호 강화)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선정 및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실태 현장점검* 실시
 - *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, 청소년보호계획 수립,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실적 등
 -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'사이버 안심존' 앱 보급, 사이버 언어폭력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'스마트안심드림' 앱 보급 지속 확대
- (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) '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' 종합계획에 따라 유아·청소년·성인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
 - 예방위주의 교육에서 사후 대응방법까지 포괄하는 교육서비스 제공

□ 향후 계획

-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운영 : ~'19.12월
-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운영 : ~'19.12월

Ⅲ.

주요 현안 과제

1 방송사업자 재허가·재승인

□ 배 경

- 허가·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업자(지상파, 종편·보도PP)에 대해 「방송법」 제17조(재허가 등)에 따라 방통위의 재허가·재승인 심사 추진

※ 방송법 제10조(심사기준·절차) 및 제17조(재허가 등)에 따른 심사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·재승인 여부를 결정

□ 주요 내용

- (재허가·재승인 제도개선) 합리적인 재허가·재승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고, 엄격한 심사를 추진하여 방송의 공익성·공공성 강화
 - 심사점수에 따라 유효기간(3~5년)을 차등화하고, 심사사항의 과락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허가 제도개선('19년 심사부터 적용)
- ※ ('19년말 재허가) 수도권 UHD 3개, 지역MBC·지역민방 21개, 라디오 12개, DMB 5개 ('20년 재승인) 종편PP 4개, 보도PP 2개
- 또한, 재난·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'재난방송 충실성 확보 계획'을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재난방송의 질적 개선을 유도
- (조건 이행점검) 재허가·재승인 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

< 주요 조건 >

지상파	·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,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,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개선 등
종편PP	·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, 오보 막말 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및 유지, 보도 장르 프로그램 합산 비율 및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등

□ 향후 계획

- '19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: '19. 12월
- 재허가·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미이행 사업자 후속조치 : 연중

②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

□ 개요

- AI·IoT 등 신기술 등장과 글로벌 ICT 환경 변화에 대비, 국내·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불균형 해소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비·시행

□ 주요 내용

- (공론화 기구 운영) 글로벌 공정경쟁 확보, 5G시대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위한 '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' 구성·운영
 -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확보, 중소 사업자 상생·협력, 5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안 등 논의
- (국내외 규제 불균형 해소)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CP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 방안 마련
 - 국내·외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 방지를 위해 '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' 마련 (방통위, 과기부 공동)
- (법제정비) 통신법제 정비 연구반 구성·운영을 통해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체계 정비 방안 마련
 - '21년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' 개선·지원

*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이 마련되었으나('18.12월 개정, '21.1월 시행), 이를 방통위와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

□ 향후 계획

-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: ~'19. 12월
-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: '19. 12월

③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

□ 개요

-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(17.12월)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상생 발전 도모

□ 주요 추진실적

- (공정거래 환경 조성) 계약서 구성, 제작비 산정·지급, 저작권 등 권리·수익배분 등에 관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* 마련
 - * ① 방송사-외주사 계약 시 서면계약 체결 등 거래의 기본원칙 확립, ② 제작비 산정 기준 등 제공 정보를 명시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, ③ 방송사·외주사의 자율적 외주제작 환경 개선 노력 유도를 목표로 마련
- (제도 개선 추진) 방송제작 현장의 안전관리 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보유 시 외주편성비율에 가중치 부여(18.12.)
- (방송제작문화 개선) 방송협회, 외주제작사 단체, 스태프노조 등과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선포식(18.11.)을 개최, 인권친화적 방송제작문화 정착을 유도
- (실태조사 실시)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거래 현황*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사·외주사 대상의 실태조사 정례화(17년~, 문체부 공동)
 - * 계약 형태, 계약체결 시기, 권리·수익배분 비율, 제작비 지급방식 등

□ 향후 계획

-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실시 : ~'19. 11월
-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: '19. 11월

IV.

참고 자료

1 2019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 현황

□ 입법 계획

법안명	주요 내용	국회제출
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	·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마련 · 방송광고판매대행사 허가·재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	'19. 10월 (법제처 사전 심사 중)
방송법	· KBS가 EBS의 송신 장비 구매를 포함한 방송 송신 일체를 지원하도록 「방송법」 제54조의 송신지원 개념과 근거를 구체화	'19. 10월 (법제처 심사 중)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	·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	'19. 11월 (법제처 사전 심사 중)
방송법	·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고,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협찬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	'19. 12월 (법제처 사전 심사 중)

□ 계류법안 현황

(2019. 9. 25.기준)

구 분	국 회 심 사 단 계		계
	과방위	법사위	
정부 제출안	10	3	13
의원 발의안	285	12	297
계	295	15	310

※ 과방위 계류 295건 중 271건은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계류, 24건은 비상정